



---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21년 실적)

---



부산광역시 수영구

Suyeong-Gu Busan Metropolitan City



# 목 차

I.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1
Ⅱ.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11
1. 지역발전사업기금	13
2. 평생학습관건립기금	21
3-1.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27
3-2.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34
3-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37
4. 양성평등기금	41
5. 식품진흥기금	49
6. 재난관리기금	57
7. 옥외광고발전기금	65



# I .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 수영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 1 총 평

- 지역발전사업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 운용성과를 분석한 지표별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수영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14.45	78.18	95.71	9.11	6.82	4

※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수 현황은 낮을수록 바람직

-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집행률 항목의 전체평균은 78.18%로 전년도 동일 유형 기초단체 평균(63.1%) 대비 양호한 편이나 개별 기금 집행률 분석 결과 사회복지기금 58.33%, 식품진흥기금 75%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항목 지표는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95.71로 나타났으나,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민간위원 비율은 각각 1/2 미만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2020회계연도 성과분석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성과분석 기준이 변경되어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향후 대면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은 양성평등기금은 타 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6.82%로 전년도(7.54%)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년도 동일 유형 자치단체 평균(1.9%) 대비 과다 조성되었으며, 이는 지역발전사업기금(266억)이 총 조성액(343억)의 77.6%를 차지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모든 기금에 정상적 경비 지출이 없었음.

## 2 지표별 분석결과

###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정책목적 :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에 달성하도록 유도
- 지표 :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 산정공식 :  $\frac{\text{사업비 편성액}}{\text{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times 100(\%)$

- 목표·기준치 :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평 균	5,449	37,702	14.45
지역 발전 사업 기 금	5,064	30,573	16.56
평생 학습 관 건 립 기 금	0	2,471	0.00
사 회 복 지 기 금	180	3,004	5.99
양 성 평 등 기 금	10	524	1.91
식 품 진 흥 기 금	48	413	11.62
재 난 관 리 기 금	평가	제	외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47	717	20.50

- 사업비 편성액 :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계획상 지출액 :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② 사업비 집행률

- 정책목적 :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 지표 :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전년도 사고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 산정공식 :  $\frac{\text{사업비 지출액}}{\text{사업비 편성액}} \times 100(\%)$
- 목표·기준치 :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평 균	4,260	5,449	78.18
지역 발전 사업 기금	3,983	5,064	78.65
평생 학습 관 건 립 기금	0	0	0.00
사 회 복 지 기 금	105	180	58.33
양 성 평 등 기 금	8	10	80.00
식 품 진 흥 기 금	36	48	75.00
재 난 관 리 기 금	평가	제	외
옥 외 광 고 발 전 기금	128	147	87.07

- 사업비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정책목적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
- 지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산정공식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목표·기준치 :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단위 : %)

기금명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평균
평 균					95.71
지역발전사업기금	Y	Y	Y	Y	100
평생학습관건립기금	N	Y	Y	Y	9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 ④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정책목적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 지표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산정공식 :  $\frac{\text{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text{기금 수입결산 총액}} \times 100 (\%)$
- 목표·기준치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계	50	549	9.11
지역 발전 사업 기금	0	402	0.00
평생 학습 관 건 립 기 금	0	12	0.00
사 회 복 지 기 금	0	80	0.00
양 성 평 등 기 금	50	55	90.91
식 품 진 흥 기 금	평가	제	외
재 난 관 리 기 금	평가	제	외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평가	제	외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예치금회수(714-01)는 제외

###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정책목적 :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지표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 산정공식 :  $\frac{\text{기금 총액(조성액)}}{\text{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times 100 (\%)$
- 목표·기준치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 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475,957	34,305	1,857	0	0	32,448	6.82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1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 ☞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 ☞ 지역발전사업기금,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 기금별 기금총액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기금총액	비고	기금명	기금총액	비고
지역발전사업기금	26,595		식품진흥기금	401	법정의무기금
평생학습관건립기금	2,458		재난관리기금	874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2,880		옥외광고발전기금	582	법정의무기금
양성평등기금	515		계	34,305	

## ⑥ 기금 수 현황

- 정책목적 :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 지 표 :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기금 수
- 산정공식 : 2021년 결산기준 설치·운영 중인 기금 수
- 목표·기준치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단위 : 개)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7	3	0	0	0	4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본보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

## 가·감점

###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지 표 :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10%미만인 자치단체는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적극 활용 검토	지역발전사업기금	X	기금운용계획수립 시 사업비 편성 확대 적극 검토 권고
		평생학습관건립기금	X	기금운용계획수립 시 사업비 편성 확대 적극 검토 권고
		양성평등기금	O	기금운용계획수립 시 사업비 편성 확대 적극 검토 권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되도록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필요	평생학습관건립기금	O	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확대 권고
		식품진흥기금	O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구성 완료(2022.6)
		재난관리기금	O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구성 완료
		옥외광고발전기금	O	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확대 권고

## ○ 경상적 경비 비율

- 지 표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산정공식 :  $\frac{\text{경상적 경비}}{\text{기금 총 지출액}} \times 100 (\%)$

- 점수산정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단, 최대 △2점)

- 경상적 경비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계	0	4,437	0.00
지역 발전 사업 기금	0	3,983	0.00
평생 학습 관 건 립 기 금	0	0	0.00
사 회 복 지 기 금	0	105	0.00
양 성 평 등 기 금	0	8	0.00
식 품 진 흥 기 금	0	36	0.00
재 난 관 리 기 금 ( 평 가 제 외 )	0	177	0.00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0	128	0.00

※ 제외대상 기금은 경상적 경비(A)만 0원으로 입력하고 기금 총 지출액(B)은 원래대로 입력함

## II. 기금별 성과분석

### 보고서



# 1. 지역발전사업기금

## (기획전략과)



# 지역발전사업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영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설치연도 : 2016년(조례 제정일 2016. 9. 21.)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 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합 계	30,176	402	3,983	△3,581	26,595	277	547	△270
주민복지계정	14,700	197	1,100	△903	13,797	137	-	137
공공청사계정	15,476	205	2,883	△2,678	12,798	140	547	△407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지역발전사업기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6.9.21.제정)에 의거, 주민의 삶과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6년 설치되었음.
-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를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 및 건축 관련 제 경비를 위한 주민복지계정과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의 신축과 관련한 제 경비 등을 위한 공공청사계정으로 구성된 수행목적별 2개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 목표액(300억원)을 조기 달성하여 2020년부터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기금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수입은 전액 이자수입으로 402백만원이고,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3,983백만원으로 2021년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581백만원이 감소한 26,595백만원임.

- 2021년 주민복지계정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과 과정로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으로 1,10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13백만원 사고이월 처리 하는 등 코로나 19, 행정절차이행 기간소요, 추가 용역 실시 및 예정사업비 초과 추가 검토 등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 공공청사계정은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 및 복지 하나로 센터(구청사 별관) 건립으로 사업비 2,885백만원을 편성하여 2,883백만원을 집행, 집행률99.93%로 사업비를 적정 집행하였음.
- 주민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와 사업의 지속을 위해 기금은 존치되어야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합 계	780	776	99.49	5,064	3,983	78.65
주민복지계정	780	776	99.49	2,179	1,100	50.48
공공청사계정	0	0	0	2,885	2,883	99.93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부지매입(780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부지매입(776백만원)	99.49%
'21년	○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179백만원) ○ 과정로 공영주차타워 조성 (1,000백만원) ○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및 공사비(1,000백만원) ○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 실시설계용역(110백만원) ○ 복지 하나로 센터(구청사 별관) 건립 부지 매입(2,775백만원)	○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63백만원) ○ 과정로 공영주차타워 조성 (38백만원) ○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및 공사비(999백만원) ○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 실시설계용역(108백만원) ○ 복지 하나로 센터(구청사 별관) 건립 부지 매입(2,775백만원)	78.6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피크타임 대기차량 발생 등의 심각한 주차난 발생,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수요 급상승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주차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필요성 대두
- 노후 동사 시설확충·개선과 구청사 과밀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 발생과 향후 복지수요의 증가 대비
- 스포츠 문화타운 이용객의 주차 편의성 증대를 위한 부설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 편성하여 실행 단계에 있으며,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거지 형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비 편성, 매입 및 일부 실시설계 완료
- 다목적 복합센터 용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광안3동 복합동사 실시설계비 및 복지업무 원스탑서비스 제공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 하나로 센터 부지매입비 편성,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의 삶과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재원 확보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 및 건축 관련 재원 확보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의 건축 관련 재원 확보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집행됨 (100%)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달성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 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 당 없 음
	'20년	해 당 없 음
	'21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복지 하나로 센터 건립	547백만원	재원확보의 안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으로 사업추진	㉔ 중 하
합계	547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출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수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에 투자함
- 재원규모 : 26,594,896,690원 (2021.12.31.기준)
  - 주민복지계정 : 13,797,258,850원
  - 공공청사계정 : 12,797,637,840원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효율적 기금운용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수영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수 입	합 계	30,350,051	%	30,952,321	%	30,578,197	%
	전입금	18,000,000	59.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102,010	39.9	30,350,051	98.1	30,176,259	98.7
	예수금						
	이자수입	248,041	0.8	602,270	1.9	401,938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350,051	%	30,952,321	%	30,578,197	%
	비용자성사업비			776,062	2.5	3,983,301	13.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350,051	100.0	30,176,259	97.5	26,594,896	87.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2. 평생학습관건립기금**

**(평생교육관)**



#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설치연도 : 2014년(조례제정일 : 2013. 09. 30.)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46.3	11.5	0	11.5	2,457.8	22.1	0	22.1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수영구 평생학습관 완공(2019.7.9일 개관)으로 기금 목적사업을 추진하였고,
- 학습시설이 소외된 수영·망미권역의 제2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음
- 2021년에는 제2평생학습관 건립 방향 검토 및 코로나로 인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제2평생학습관 건립계획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준치 필요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0	0	0	0	0	0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 20년	-	-	-
' 21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평생학습관 건립 후 남은 기금으로 학습시설이 소외된 수영·망미권역의 제2평생학습관 건립계획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부 산 광 역 시 수영구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평 생 학 습 관 건 립 기 금 적 립 (용 도 : 토 지 매 입 및 건축비 등 제경비)	2019.7월 수영구평생학습관 건립 집행잔액 24억원 보관 중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없음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 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다.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2,491백만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시설 건립계획 ▷ 존치필요	㉔ 중 하
합계	2,491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4년 수영로교회 소유 직원주차장 부지매입비 45억으로 건립기금 설치
- 2015년 이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매년 3억씩 출연하여 2023년까지 조성목표액 70억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 2016년도에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평생학습관을 건립함으로써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였고,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비 조달은 기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추가 출연금을 조성하지 않았음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을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 관리함으로써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음.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으로서의 존치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전년도 이월액	합 계	22,018	%	0	%	0	%
	비용자성사업비	22,018					
수 입	합 계	3,910,430	%	2,446,280	%	2,457,82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842,215	98.3	2,403,640	98.3	2,446,280	99.5
	예수금						
	이자수입	68,215	1.7	42,640	1.7	11,540	0.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932,448	%	2,446,280	%	2,457,820	%
	비용자성사업비	1,528,808	38.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403,640	61.1	2,446,280	100.0	2,457,820	10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3. 사회복지기금**

**(가족행복관 · 기초생활보장관)**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기초생활보장계정)」
- 설치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일 2005. 5. 1.)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68	70	105	△35	2,233	213	304	△91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기에 기금의 조성·활용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계정은 2012년 말 459백만원으로 기금목표액 500백만원 미만이었으나, 2013년 자활사업단 공공수익금 1,230백만원을 정산해 기금조성액이 크게 상승했음.(2013년 말 1,693백만원 조성)
- 기초생활보장계정은 2013년 사업자금 10백만원 대여를 시작으로 2021년말까지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목적으로 총 190백만원 대여 중임
- 2021년 수입은 2020년 이월금 2,268백만원 및 융자금 반환금, 이자수입 등 70백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및 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 등 105백만원으로 2021년말 조성액은 2,233백만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을 운용하여야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0	266	76	180	105	58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350백만원, 200명)</li> <li>-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13백만원)</li> <li>- 자활센터, 사업장 환경개선 및 교육장 지원 (117백만원)</li> <li>- 자활센터, 사업장 전세자금 융자 지원 (22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266백만원, 150명)</li> <li>-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13백만원) (자활참여자 직무능력 교육)</li> <li>- 자활센터, 사업장 환경개선 및 택배차량 지원 (73백만원)</li> <li>- 자활센터, 사업장 전세자금 융자 지원 (180백만원)</li> </ul>	76%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180백만원, 200명)</li> <li>- 자활참여자 교육지원(13백만원)</li> <li>- 전문인력배치 인건비지원(29백만원)</li> <li>- 자활센터, 사업장 환경개선 및 교육장 지원 (98백만원)</li> <li>- 자활센터, 사업장 전세자금 융자 지원 (4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105백만원, 150명)</li> <li>- 자활참여자 교육지원(13백만원)</li> <li>- 전문인력배치 인건비지원(11백만원)</li> <li>- 자활센터, 사업장 환경개선 및 교육장 지원 (81백만원)</li> </ul>	58%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b>구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활용</b>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어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어 · 지역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위한 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달성 (100%)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자활참여자 전문 기능습득 교육비 지원,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자립 활성화에 기여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자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	304백만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신속적 집행이 필수적임	㉓ 중 하
합 계	304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초생활보장계정은 區 출연금 50백만원, 자활사업 수익금 및 예치이자 2,183백만원으로 총 2,233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목적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관련사업(자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음.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으로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존치 및 기금규모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후 적정하게 집행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수 입	합 계	2,309,440	%	2,534,782	%	2,338,59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634	0.2	173,667	6.8	13,683	0.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09,245	87.0	2,296,440	90.6	2,268,382	97.0
	예수금						
	이자수입	46,550	2.0	39,829	1.6	25,955	1.1
	기타수입	250,011	10.8	24,846	1.0	30,579	1.3
지 출	합 계	2,309,440	%	2,534,782	%	2,338,599	%
	비용자성사업비	13,000	0.6	86,400	3.4	105,000	4.5
	융자성사업비			180,000	7.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96,440	99.4	2,268,382	89.5	2,233,599	95.5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노인복지계정)」
- 설치목적 :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 설치년도 : 2005년(조례제정일 2005. 5. 1.)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5	3	0	3	318	3	0	3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300백만원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노인 사기 양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 예치금은 정기적금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최대한 수익이 발생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0	0	0	0	0	0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복지계정)	지역주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증진	-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여가 활성화 사업 추진	목표액 달성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없음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없음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20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노인복지증진사업	0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기금 필요함.	상 ㉠ 하
합 계	0		

### 4. 사업의 유사성

####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의 재원조달 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 300백만원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함.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조성액은 기금 사용 용도에 맞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사용 예정

###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		'20		'21	
수 입	합 계	313,692	%	314,888	%	318,36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7,116	97.9	309,392	98.3	314,888	98.9
	예수금						
	이자수입	6,576	2.1	5,496	1.7	3,478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13,692	%	314,888	%	318,366	%
	비용자성사업비	4,300	1.4	0	0.0	0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9,392	98.6	314,888	100.0	318,366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장애인복지계정)」
- 설치목적 :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 설치년도 : 2013년(조례 개정일 2013. 5. 1.)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2	5	0	5	327	3	10	-7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장애인복지기금은 2013.5.1.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하였음. 2019년까지 3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2019년말 3억원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장애인재활 및 인식개선사업 등의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계획 수립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등으로 욕구조사 결과 취합이 어려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0	0	0	0	0	0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현재 목표액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복지계정)	-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등	○ 장애인재활사업 ○ 인식전환사업 ○ 장애인관련 행사	목표액 달성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없음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재활교육	10백만원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재활교육 사업에 지출 예정	상 (중) 하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구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목표액 달성하였으며, 장애인재활 및 인식개선사업 등의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지출할 계획임.

###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		'20		'21	
수 입	합 계	314,800	%	321,946	%	327,837	%
	전입금	50,000	15.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9,582	82.4	314,800	97.8	321,946	98.2
	예수금						
	이자수입	5,218	1.7	7,146	2.2	5,891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14,800	%	321,946	%	327,837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14,800	100.0	321,946	100.0	327,837	10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4. 양성평등기금**

**(가족행복관)**



#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 설치연도 : 2000년
  - 2000. 8. 1. 「여성발전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여성정비기금 설치
  - 2015. 9. 23. 「양성평등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68.8	54.8	8.2	46.6	515.4	54.9	7	47.9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부터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5억원 조성 목표로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함.
- 2021년에는 기금 운용수익금(이자수입)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및 수영 아빠 육아 사진전,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수영구 TV』를 운영하여 8백만원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호신술 아카데미를 당초 대면 교육에서 언택트 온라인 방송으로 대체하였음.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의 목표를 적절히 수행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 중이며,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목적 사업을 신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4.8	60	9.6	8.2	85.4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I 운영 (4백만원, 10명)	○ 수영구 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3.6백만원, 9명)	94%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II 운영 (2.3백만원, 60명)	○ 생생취업 Talk프로그램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행사 취소	-
	○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 (1.7백만원, 80명)	○ 여성 호신술2·3기 동차 교육영상 (5분·6분) 제작 및 『수영구TV』 게재 (1.2백만원, 조회수 820회) ※ 코로나19로 운영방법 변경 : 대면 ⇒ 비대면	71%
'21년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I 운영 (5.2백만원, 13명)	○ 수영구 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4.8백만원, 12명)	94%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프로그램 II 운영 (1.5백만원, 10명)	○ SW코딩 자격증 취득반 운영 (1.5백만원, 10명)	100%
	○ 수영 아빠 육아 사진전 (1.6백만원, 우수작 10점 선정)	○ 아빠 육아 사진전 개최 (1.6백만원, 우수작 10점) - 사진전 개최 : '21.9.1~9.7. - 우수작 10점 상장 및 시상, 입상 10점 선정 시상 (총 85개 작품 사진전 응모)	100%
	○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 (1.3백만원, 100명)	○ 여성 호신술2·3기 동차 교육영상 (5분·6분) 제작 및 『수영구TV』 게재 (0.3백만원, 강사료) ※ 코로나19로 운영방법 변경 : 대면 ⇒ 비대면	23%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 양성평등기본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 여성권익증진 사업 · 여성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사업 · 여성 국제협력사업과 여성단체사업 · 저소득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	100%	

####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 및 경제활동 경쟁력을 제고 하며,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여성인권 보호 및 역량강화(안전)에 기여함.
- ‘수영 아빠 육아 사진전’ 개최로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 및 공동육아 문화 조성에 기여함.

####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 감사 지적 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	6백만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신속적 집행이 필수적이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사업을 실시하므로 기금형태 유지	③ 중 하
돌봄노동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 : 총 재원조성액 587백만원  
(구 출연금 460백만원, 이자수입 127백만원, 사업비 72백만원)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규정에  
의거 의무 설치 기금이므로 존치 필요하며, 2022년도 기금 5억원 조성 완료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확대 운영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수 입	합 계	423,178	%	473,738	%	523,756	%
	전입금	50,000	11.8	50,000	10.6	50,000	9.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65,288	86.3	416,578	87.9	468,887	89.5
	예수금						
	이자수입	7,890	1.9	7,160	1.5	4,869	0.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23,178	%	473,738	%	523,756	%
	비용자성사업비	6,600	1.6	4,851	1.0	8,277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16,578	98.4	468,887	99.0	515,479	98.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5. 식품진흥기금

## (환경위생과)



#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원활한 수행
- 설치연도 : 2001년(조례 제정일 2001. 11. 1.)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39	98	36	62	401	77	63	14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음식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업소당 5개씩 배부하여 안전한 식문화 조성 및 코로나 19에 적극 대응함.
- 아울러 '안심식당' 175개소 대상 덜어먹는 조리도구(테이블용 스텐국자 및 스텐집게)를 업소당 8세트씩 지원하여 각자 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도모함.
-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운영하여 신청업소 47개소 대상 위생용품(KF94마스크), 지정업소 66개소대상 홍보물품(홍보배너, 배달업소 스티커) 및 지원물품(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정착화에 기여하였으며,
- 빵천동 특화거리 내 음식점 31개소에 테이크아웃 컵홀더(홍보용) 10,000개 배부, 건강음식점 14개소 대상 포장용기·봉투(업소당 70세트) 배부 등 음식 문화개선 사업도 꾸준히 운영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자치단체 지원사업 교부금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관련 교육·홍보,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운영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존치가 필요.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8	39	81	48	36	75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홍보사업</li> <li>○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원사업</li> <li>○ 식중독 예방 사업</li> <li>○ 보상금 및 감시원 활동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홍보사업(1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너 및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제작</li> <li>▶ 음식관광마케팅 강화 홍보콘텐츠 제작</li> </ul> </li> <li>○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원사업(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등급 신청업소 '생활방역 4종세트' 지원</li> <li>▶ 위생등급 지정업소 배너 및 위생용품 지원</li> <li>▶ 건강음식점 '생활방역 4종세트' 지원</li> <li>▶ 식품접객업 자율점검 체크리스트</li> <li>▶ 식품제조 핵심길라잡이 제작</li> <li>▶ 식품위생 모범업주 상패제작</li> <li>▶ 유통식품 수거(연말연시 케이크류)</li> </ul> </li> <li>○ 식중독 예방사업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시약 및 ATP소모품 구입</li> </ul> </li> <li>○ 보상금 및 감시원활동비 (1백만원)</li> </ul>	81%

<p>'2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홍보사업</li> <li>○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원사업</li> <li>○ 음식점 칸막이설치사업</li> <li>○ 식중독 예방 사업</li> <li>○ 보상금 및 감시원 활동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홍보사업(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관련 홍보물 등 제작</li> <li>▶ 빵천동 특화거리 홍보 컵홀더 제작</li> </ul> </li> <li>○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지원사업(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등급 신청업소 '생활방역 위생용품' 지원</li> <li>▶ 위생등급 지정업소 배너 및 지원물품 지원</li> <li>▶ 건강음식점 '포장용기 및 봉투' 지원</li> <li>▶ 안심식당 대상 덜어먹는 도구 지원</li> <li>▶ 식품위생 모범업주 상패제작</li> <li>▶ 유통식품 수거(연말연시 케이크류)</li> </ul> </li> <li>○ 코로나19대응 소규모 음식점(10백만원)</li> <li>○ 식중독 예방사업 (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시약 및 ATP소모품 구입</li> </ul> </li> <li>○ 보상금 및 감시원활동비 (3백만원)</li> </ul>	<p>75%</p>
-------------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맞추어 음식점 칸막이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하였고 2020년부터 시작된 안심식당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안심식당 운영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여 음식점 영업자들의 음식 문화개선 실천의지를 제고함.
-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영업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관내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이와 더불어 음식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빵천동 특화거리 홍보, 건강음식점 관리, 식중독 예방사업을 꾸준히 운영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을 적정하게 운용함.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li> <li>·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도모</li> <li>·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원활한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li> <li>·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li> <li>· 어린이 식생활 개선 위한 교육자료 지원</li> <li>·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사업 지원</li> <li>· 식중독 예방 사업 지원</li> <li>· 소비자 감시원의 활동 지원</li> </ul>	100%	

####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교육 및 홍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이 진행되어 식품위생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고 음식문화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 감사 지적 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음식문화개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및 식중독 예방 사업	45백만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며,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므로 기금 형태 유지	상 중 하
②보상금 및 감시원활동비	4백만원	불량식품 관련 신고보상금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는 필수적	상 중 하
합 계	49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자치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재원조성에 적정함.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나트륨 저감화 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수 입	합 계	374,839	%	378,131	%	437,558	%
	전입금						
	보조금			13,500	3.6	22,000	5.0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88,209	76.9	338,107	89.4	339,496	77.6
	예수금						
	이자수입	5,640	1.5	6,424	1.7	6,528	1.5
	기타수입	80,990	21.6	20,100	5.3	69,534	15.9
지 출	합 계	374,839	%	378,131	%	437,558	%
	비용자성사업비	36,732	9.8	38,635	10.2	36,028	8.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8,107	90.2	339,496	89.8	401,530	91.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6. 재난관리기금**

## **(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 설치연도 : 1997년(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
  - 1997.01.10. 「부산광역시수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대책기금을 설치·운영
  - 1999.02.12. 「부산광역시수영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영
  - 2005.01.0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두 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운영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65	386	177	209	874	436	320	116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일반운영비에서 표지판 및 홍보물품 구매 등(2백만원),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역물품 및 자가격리자 식품키트 (78백만원) 지출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24백만원) 및 살수차 운영(4백만원)에 지출하였음.
- 재료비에서 인명구조함 교체 및 정비(9백만원)를 하였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해 모래마대 구입 등(14백만원)에 지출하였음.
-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수저류시설 제진기 정비공사 등 공사·용역계약(46백만원)에 지출하였음.
-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되는 사업 없이 추진하였고, 수입 재원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됨.

- 관련법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 자원확보를 위하여 본 기금을 존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88	1,986	95	312	177	57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일반 운영비(109백만원)	○ 일반 운영비(109백만원)	95%
	- 재난예방 주민홍보(7백만원)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긴급대응(50백만원) -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기술자 수당(37백만원) - 재난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용 중장비 임차(15백만원)	- 재난예방 주민홍보(7백만원)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긴급대응(76백만원) -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기술자 수당(21백만원) - 재난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용 중장비 임차(5백만원)	
	○ 재료비(30백만원)	○ 재료비(28백만원)	
	-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자재 구입(30백만원)	-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자재 구입(28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150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51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15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51백만원)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1,800백만원)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1,800백만원)		

'21년	○ 일반 운영비(132백만원)	○ 일반 운영비(108백만원)	57%
	- 재난예방 주민홍보(8백만원)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긴급대응(50백만원) -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기술자 수당(59백만원) - 재난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용 중장비 임차(15백만원)	- 재난예방 주민홍보(2백만원)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긴급대응(78백만원) -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기술자 수당(24백만원) - 재난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용 중장비 임차(4백만원)	
	○ 재료비(30백만원)	○ 재료비(23백만원)	
	-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자재 구입(30백만원)	-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자재 구입(23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150백만원)	○ 시설비 및 부대비(46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150백만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46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의 예방 및 대응,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의 운용하여 재난 대응 능력 제고 및 재난 예방에 기여함.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기금 조례	재난예방(교육홍보) 및 신속한 응급조치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재난대응 신속한 응급조치 · 재난예방 주민홍보 · 재난대응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공사(조치)	100%	

####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대응 신속한 응급조치
-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인명피해 우려지 안내표지판 등 안전 표지판 정비
-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자문수당 지급
- 해안가 인명구조함 및 119 구급함 정비
- 공공시설물 긴급 보수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신속한 응급조치	320백만원	· 매년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상 중 하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액과 관련 공금예금 계좌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조성
- 이에 따른 2021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873백만원이며, 2021회계연도 조성액은 법정적립액 376백만원 및 이자수입 9백만원으로 총 385백만원의 재원이 조성되었음.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며, 각종 재난 대응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존치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수 입	합 계	2,476,864	%	2,651,869	%	1,050,705	%
	전년도 이월액					21,581	2.1
	전입금	326,630	13.2	349,936	13.2	376,038	35.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09,399	85.2	2,262,905	85.3	643,830	61.2
	예수금						
	이자수입	40,835	1.6	39,028	1.5	9,256	0.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476,864	%	2,651,869	%	1,050,705	%
	다음년도 이월액			21,581	0.8		
	비용자성사업비	213,959	8.6	1,986,458	74.9	177,121	16.9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62,905	91.4	643,830	24.3	873,584	83.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 7. 옥외광고발전기금

## (도시관리과)



# 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I. 기금운용 개요

### 가.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연도 : 2008년(조례 제정일 2008. 5. 23.)

### 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91	22	132	-110	581	45	212	-167	

## II. 분석결과

### 1. 총 평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되는 사업 없음.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의 목표를 적절히 수행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중이며,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을 계속 존치하여 운용함이 타당할 것임.

## 2. 사업운영의 성과

### 가.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8	196	94	151	132	87

### 나.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6백만원, 3만건)</li> <li>○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34백만원, 25개)</li> <li>○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58백만원, 8개소)</li> <li>○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60백만원, 1,200명)</li> <li>○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20백만원, 10,000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2백만원, 3만건)</li> <li>○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33백만원, 25개)</li> <li>○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53백만원, 8개소)</li> <li>○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58백만원, 1,178명)</li> <li>○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20백만원, 6,702장)</li> </ul>	94%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33백만원, 4개소)</li> <li>○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80백만원, 1,600명)</li> <li>○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20백만원, 10,000장)</li> <li>○ 광고미게침 옥외광고지원사업(18백만원, 4개 광고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31백만원, 4개소)</li> <li>○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67백만원, 1,388명)</li> <li>○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16백만원, 5,967장)</li> <li>○ 광고미게침 옥외광고지원사업 (14백만원, 3개 광고매체 지원)</li> <li>○ 기타반환 (4백만원, 광고미게침 옥외광고지원사업 1개소 신청 취소 건 반납)</li> </ul>	8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화된 수동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반자동형으로 교체·설치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광고미게침 간판활용 옥외광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위축된 옥외광고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함.
- 관내 주요 간선로 및 이면로의 공공시설물 등에 상습적으로 부착,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벽보·명함형전단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주·야간 및 주말(공휴일) 365일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유지하여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실시하여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 및 민원발생 해소,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함.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가.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100%	

나.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불법전단지·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실시하여 무차별적인 게릴라성 부착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사각지대의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함.
- 「광고미게침 옥외광고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옥외광고업자 경영개선 지원

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 당 없 음	
	'20년	해 당 없 음	
	'21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라.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마.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격년)	39백만원	· 정확하고 신뢰있는 DB을 구축하여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신청 및 자진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중 하
② 옥 외 광 고 물 안전점검 및 재해발생대비 옥 외 광 고 물 정비사업	33백만원	· 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예산 편성	Ⓢ 중 하
③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20백만원	· 구정 시책 홍보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기금예산 편성	Ⓢ 중 하
④발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 (불법전단지, 불법현수막)	120백만원	· 무차별적으로 부착되는 불법전단지 및 불법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보상금의 신속적 집행을 위해 기금예산 편성	Ⓢ 중 하
합 계	212백만원		

#### 4. 사업의 유사성

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581백만원으로서,
  - 수입 : 예치금회수 691백만원, 기타수입 18백만원, 이자수입 4백만원
  - 지출 : 예치금 581백만원, 사업비 132백만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허가(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으로 조성되어 옥외광고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옥외광고발전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적립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미편성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므로 존치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 19		' 20		' 21	
수 입	합 계	986,366	%	886,660	%	713,752	%
	전입금	150,000	15.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20,639	83.2	872,861	98.4	691,339	96.9
	예수금						
	이자수입	15,727	1.6	13,799	1.6	4,584	0.6
	기타수입					17,829	2.5
지 출	합 계	986,366	%	886,660	%	713,752	%
	비용자성사업비	113,505	11.5	195,322	22.0	128,406	18.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72,861	88.5	691,338	78.0	581,682	81.5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664	0.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